

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

(2쪽 중 1쪽)

수신 : 성균관대학교총장

2023년 캠퍼스타운(종합형)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합니다.

- 지방보조사업명: 캠퍼스타운조성
- 지방보조사업자: 성균관대학교
- 총 사업비: 금1,722,500,000원(금일십칠억이천이백오십만원)
- 교부결정액: 금1,285,890,000원(금일십이억팔천오백팔십구만원)
- 금회교부액: 금600,000,000원(금육억원)

- 시비보조금 교부내역

(단위:천원)

세부사업명	예산액	기 교부액	교부 요청액	금회 교부액	교부잔액	비고
캠퍼스타운조성	1,722,500					
(민간경상사업보조)	1,235,890	-	600,000	600,000	635,890	
(민간자본사업보조)	50,000	-	-	-	50,000	
(사무관리비)	390,610					자치구 집행
(행사운영비)	46,000					

- 예산과목 : 일반회계

분야	부문	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통계목
사회복지	노동	고용 촉진 및 안전	청년 자립기반 조성 및 정책 활성화	캠퍼스타운 조성	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

- 사업개요

- 사업내용: 성균관대학교 「역사, 예술, 문화×기술혁신=창업으로 사람이 모이는 서울」
- 사업기간: 2023.1.1. ~ 2023.12.31.
- 사업규모: 금1,722,500,000원(시비 100%)

□ 교부조건

- 보조사업자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기타 관계법령 및 협약서,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.
-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
 - 가.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 - 나.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 - 다.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,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
 - 라.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
 - 마.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
-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
 - 가. 「지방보조금법」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
 - 나. 「지방보조금법」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
 - 다. 「지방보조금법」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
 - 라. 「지방보조금법」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
- 지방보조금을 최소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할 때,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수행상황 점검을 할 수 있음

2023년 3월 10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